

2024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공항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한국공항공사 사장

1

사업 목적

- ☐ 국토교통 및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2

사업 개요

- ☐ (프로그램명) 2024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
- ☐ (지원기간) 기업선정일 ~ 2024.12월
- ☐ (지원대상)
 - 항공관련 분야 등 공항 유관 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개社)
 -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 (우대사항) 공사와 협력관계(공사 상생결제시스템 제도 약정기업 KAC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참여기업 공동R&D, 물품공사용역 거래 경험 등에 있는 중소기업 (가점 10점 / 최대 10점 반영)

☐ (모집유형)

— < 지원가능 분야(유형) > —

☐ 창업벤처기업(20개사)

▶ (주요내용) 창업·벤처 일자리 지원 및 사업화 지원(3가지 유형 택일)

- ① **일자리 지원** :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 지원
 - ②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테스트베드 시행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자금 지원
 - ③ **KAC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육성** : 항공분야 시제품 제작·보완, 테스트베드 시행 등 기술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3가지 중 택일, 유형을 표기하여 제출

☐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①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②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가,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③ (KAC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육성)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테스트베드 시행 등 기술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진출 역량 지원

☐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20社)

* 회계 정산 비용 포함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선(先) 지급

□ (신청기간) 2024. 7. 25(목) ~ 8. 15(목) 18시까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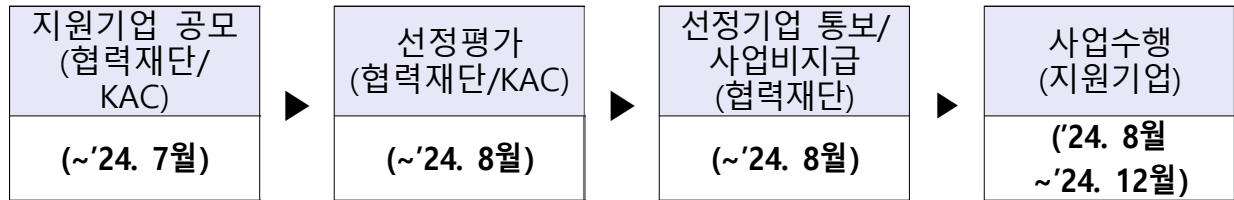
□ (신청접수) 신청서류 스캔본 E-Mail 제출

추진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정주호 과장	02-368-8489	startup@win-win.or.kr
		신지원 대리	02-368-8979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확인서), 관련 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우대사항 관련 문의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부 김경원 주임(02-2660-2657)

□ 추진 일정 / 해당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종료 이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도용·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전담기관(협력재단)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별첨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